

# 장외영향평가서 주요 질의 및 답변

2015. 1

○ (질의 1) 화관법 시행 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인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답변 1) 예,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부칙 제8조 제3항에서 1년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 (질의 2) 기존 시설에 인접하여 신규로 저장탱크를 하나 신설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2) 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탱크의 설치가 영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변경 허가 신청 시에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의 3) 2014년에 기존시설의 증설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3) 취급시설의 증설이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 (질의 4) 건설현장 중에서도 콘크리트 폐수의 중화 등으로 가성소

다와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건설업체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4) 예, 법 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로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의 5) 건설업에서 수주 받은 플랜트 등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누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되는가요?

⇒ (답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작성·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질의 6)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6)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영향범위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위해우려영향범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범용프로그램 또는 이와 동등수준이라고 간주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 (질의 7) 사업장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을 때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 (답변 7)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작성은 단위공장

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공장의 구분은 사업장 형태 및 사업장의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질의 8) 직접 작성하기엔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 (답변 8)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5년부터 장외영향평가를 작성자 교육을 실시하며, 작성자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년 상반기 중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인바, 이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